

공

고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6.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참조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4.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32조(이용자보호), 제82조(검사·보고 등),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5.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의견제출기한 : 2026. 7. 31.
7. 의견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 행정처분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

기간통신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명 (처분대상)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처분의 원인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제1-01-25 -0007호	(주)펜타에이	110111-***8363	남*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	- 기술인력 변경 미등록	시정명령
제1-01-19 -0011호	(주)원텔레콤	110111-***5193	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	- 연간매출액 현황조사 자료 미제출 - 선불통화 보증보험 기간 만료(미갱신) - 선납비용 총액조사 자료 미제출 - 사업장 주소 변경 미등록	